

강의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4. 3. 1. 개정 2016. 6.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수의 교수방법 개선과 양질의 수업풍토 조성을 통해 학생의 학습 만족도를 높이고 수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수의 강의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시기) 강의평가는 매 학기마다 실시하며, 실시 시기는 매 학기 종료 2주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강의평가는 교학처 주관으로 실시하며 학생에 의한 설문을 통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7.1., 2014.3.1.>

②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는 평가 장소에 참석할 수 없다.

제4조(평가대상) 강의평가는 당해 학기에 개설한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의평가 설문과 강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교과목, 팀티칭교과목, 개인레슨형태의 교과목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제5조(유효인정) 강의평가 설문결과는 해당 수강생이 설문에 참여하여 성실히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취업, 실습 등으로 강의평가 참여자 수가 수강인원의 2/3에 미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평가내용) 강의평가 내용은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수업효과, 수업만족도 등을 포함한 설문형식으로 한다.

제7조(배점기준) 각 설문 항목별 최고점수는 5점으로 하며, 아래표의 기준에 따라 설문내용을 평가한다.

평가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담당교수는 강의분석을 통해 자신의 강의를 개선시키는 준거자료로 활용한다.

② 강의평가 결과는 교원업적평가에 “교육영역”의 일부분으로 포함시켜 활용한다. <개정 2013.7.1., 2014.3.1.>

③ 강의평가 결과, 총점 평균(100점 만점 환산 점수)의 50점에 미달하는 교과목을 담당하 전임교수에게는 경고 조치한다. <개정 2013.7.1.>

④ 강의평가 결과, 총점 평균(100점 만점 환산 점수)의 50점 이상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교과목을 담당하 전임교수에게는 주의 조치한다. <개정 2013.7.1.>

⑤ 겸임교원을 포함한 비전임교원은 강의평가 결과 총점평균이 2회연속 50점에 미달하거나 3회 연속 50~60점 미만인 교과목을 담당한 비전임교원(겸임, 초빙, 객원교수)은 재임용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간강사는 강의평가 결과 총점 평균의 50점에 미달하거나 2회 연속 60점미만인 교과목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의 제3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 교과목의 강의평가 결과 동일 직급 내에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전임교원에 대하여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승진을 유보할 수 있다.

⑧ 직업기초 교양 교과 담당한 교수는 강의평가 결과 총점 평균 50~60점 미만인 경우 교원연수를 실시한다.<신설 2016.6.23.>

제9조(평가결과의 공개) 강의평가 결과는 총장, 담당교수 개인과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는 해당 학부(과)장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3.1.>

제10조(강의 우수교수의 선정 및 포상) 강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전임교원과 시간강사에 한하여 매 학기 강의우수자(학부별 상위 10%이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